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4. 11. 12.

임실군의회의회장

1. 제정이유

민선6기 군수공약 사항으로 임실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 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의 영농비를 일부 지원하여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제정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등 사항(안 제3조~제5조)
- 다. 영농비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영농비 점검 및 방법과 지원중지 등 사항(안 제7~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
- 나. 예산조치 : 2015년도 본예산 132,660천원
- 다. 협의 : 예산담당 협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14.10.15 ~ 2014.11.04)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기획감사실-11262(2014.10.16)비규제
 - (3) 비용추계서 : 불임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불임
 - (4) 관련법 발취문 : 불임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 영농경영비를 일부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고령 영세농업인"란 제1호의 농업인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만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농지의 소유 및 경작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3,300평방미터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 실경작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에게 지원한다(법인 제외). 단, 정부에서 고시하는 쌀 변동 직불금 지급기준 목표금액 보다 농외소득(겸업소득, 연금, 노령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 급여 등)이 많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 금액) 영농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벼 육묘·경운·정지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업경영비 중 일부를 지원 한다.

제5조(지원기준) 벼 경작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3,300평방미터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영농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제7조(점검 및 방법)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이행점검 방법으로 하며,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지급제외 대상농지를 농지소재지 읍·면장의 이행점검 방법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 받았을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영농경영비 벼 육묘,경운,정지등 일부 지원
- 관련조문
 -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제4조(지원금액)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70이상 고령 1,000㎡~3,300㎡미만 농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나. 추계 결과

- 2015년도 614농가134ha×990천원=132,660천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벼 육묘 : 134ha×990천원=132,660천원
(1ha당:묘판 300개×3,300원=990천원)
- 최저 : 1,000㎡당 묘판 30개×3,300원=99,000원
- 최고 : 3,300㎡ 묘판 99개×3,300원=326,700원

3. 재원조달 방안

2015년부터 본예산에 반영

4. 작성자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세 출							
재원 조달		132,660	132,660	132,660	132,660	132,660	
의존 재원	소 계	132,660	132,660	132,660	132,660	132,660	
	보조금						
	지방교부세						
	군 비	132,660	132,660	132,660	132,660	132,66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

제54조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영 어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